

1974. 11. 10

# 기안용지

문서번호	법무 181.7	2/2 (전화번호 3 0 7 )	결구형	소 함
처리기관	제 1 부 시 장		시 장	
시행일자				
보존년한				
보	기획관리관		40222	
조	법무 담당관			
기	법제계장			
관				
기안책임자	강 성 희	73. 12. 24	조	
경 유 수 신	각 안 참 조		발 신	
계 목	서울특별시경찰국 위임전결규정중 개정			
(제 1 안) 내부 결 제				
<p>종전의 계장전결 사항인 경제사범및 마약 사범 수사처리를 과장전 결 사항으로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국 위임전결규정을 별안과 같이 개 정랴코자 합니다.</p>				
(제 2 안)				
수 신	문화공보실장			
제 목	시보 게재 의뢰			

201-1-8A

197mm X 260mm 면 상 지 40g/m<sup>2</sup>

1969. 11. 10. 승인

1367

서울특별시경찰국 위임전결규정을 벌침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

시보에 게재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공 포 안 1 부 끝.

(제 3 안)

수신 경찰국장

참조 경무과장

제목 동 건

경무 180-40014 (73. 11. 7)로 요구한 서울특별시경찰국 위임전결  
규정중 개정규정을 벌침과 같이 공포하기로 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만전을 기  
할지.

첨부: 공 포 안 1 부 끝.

( 권 령 안 )

서울특별시훈령 제 호

서울특별시경찰국 위임전결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973년 월 일

서울특별시장

서울특별시 경찰국 위임전결규정중 개정규정

서울특별시 경찰국 위임전결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수사란 제6호중 "계장" 전결을 "과장" 전결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개 정 이 유

서울특별시경찰국 위임전결규정(훈령 제369호)중 수사과 경제계 소관 사무중 경제사범및 마약사범 수사 처리는 그 업무 성질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할때 중요한 업무이므로 계장전결이던 것을 과장전결로 조정코저 함.

신 구 대 비 포  
원 행 개 정

기 종 명	이 력 번호	건 명	계 장	과 장	국 장	기 종 명	이 력 번호	건 명	계 장	과 장	국 장
수 사	6	경제사범및 마약 사범수 사처리	0			수 사	6	경제사범및 마약 사범수 사처리	0		

서울특별시

영부 180-40014

1973. 11. 7

수신 서울특별시청

참조 법무과

제목 서울특별시 경찰국 위임 전결 규정 개정

서울특별시 경찰국 위임전결 규정을 법무과장이 개정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서울특별시 경찰국 위임 전결 규정안 3부 7공.

담	당	법	제	제	장	부	부	담	담	관



김태용

경찰국장



영부 180-40014  
 영문서 작성제 2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 
 경찰국장 김태용 전결

서울특별시 훈령 제

호

서울특별시 경찰국 위임선거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1973. 10. .

서울특별시장 양 목 식

서울특별시 경찰국 위임선거 규정중 개정규정(안)

기능병 수사 일면번호 6, 경제사범및 마약사범 수사처리 \*계장\* 선거음 \*과장\*  
선거로

부 칙

이규정은 1973년

월

일 부터 적용한다

1. 서울특별시 경찰국 위업 건립 규정 (훈령 제 359호)중 수사과 강제계

소관 사무

경계 사범 및 카우사범 수사여부는 그 업무 성질과 사의 미치는 영향등

서의 영연상 가장 건립도 조정로거 함.



신 규 대 리 보

구				신			
기능별	인원 번호	건 명	계장과장국장	기능별	인원 번호	건 명	계장과장국장
수 사	6	경제사범 및 마약 사범수사 취직	0	수 사	6	경제사범 및 마약 사범수사 취직	0